

토의용 논문 W21 / 2003. 7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김 명 환 선임연구위원
박 동 규 연 구 위 원
서 진 교 부 연구위원
이 병 훈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DDA 및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될 급격한 상황 변화는 향후 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쌀산업 정책은 수매-방출제도와 쌀 생산·가공 지원시책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와 쌀농업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매-방출제도는 아직도 쌀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수매가격 인상·인하폭이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현재는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수매가격은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단기적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쌀 수요의 지속적 감소, 재고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쌀 산업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2010년까지 나타나게 될 시나리오별 쌀 농가의 소득문제를 전망하고 쌀 수매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쌀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3.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II.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3
3. DDA 농업협상 전망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9
6. 협상대책 11

III.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17

IV. 정책제안 1: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23

V. 정책제안 2: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26

VI. 요약

표 목 차

표 1. 관세감축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4
표 2. 관세할당 증량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4
표 3. 국내보조감축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5
표 4. 의장초안 적용시 쌀의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수준	6
표 5. 쌀 관세화시 2010년 예상 수입량과 시장접근물량의 관계	10
표 6. DDA 시나리오별 쌀 소득, 생산, 가격 전망	16
표 7. DDA 시나리오별 수매 가능물량	21
표 8. DDA 시나리오별 수매의 직접소득효과 전망	22
표 9. 수매가격 시나리오별 시장가격과의 격차 전망	22

그 립 목 차

그림 1. DDA 시나리오별 쌀 총소득 전망	17
그림 2. DDA 시나리오별 쌀 총소득 구성 전망	18
그림 3. 수매가격 인상률과 수확기시장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	20
그림 4. 10a당 쌀 소득목표 설정	2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960년대 이후 쌀 정책은 수매제도와 생산·가공지원시책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입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003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은 향후 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에 예정되어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하 쌀재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DDA 및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될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벼농업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DDA 농업협상의 예상 시나리오별 쌀 가격 및 소득, 수매가능량, 소득보전 직불 소요예산, 수급상황 등을 전망
- 벼 재배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효율적 활용 방안, 수매제도, 소득정책 추진 방안 등을 제시

Ⅱ. DDA 농업협상과 쌀재협상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쌀 시장의 관세화 개방 여부는 2004년 쌀재협상에서 결정되지만, 2005년 이후의 쌀 시장 개방 폭과 보조금 감축에 관한 일반 원칙은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르게 된다.

1. DDA 농업협상 일정

- DDA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의 DDA 출범을 계기로 협상의 기본 원칙과 목적,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 협상의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① 시장접근의 상당한 개선, ② 교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③ 폐지를 목표로 한 수출보조의 감축 등을 협상목표로 설정하였다.
 - 협상 일정은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9월까지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2004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DDA 농업협상은 최종 합의도출까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단계는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도출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CS 제출 이후 전개될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 단계이다.
 - 2003년 현재의 현 단계는 세부원칙 도출단계로서 ① 관세 감축 폭과 관세할당(TRQ)¹ 증량폭, ② 국내보조금의 규제범위와 감축 폭, ③ 수출보조금 감축 폭에 관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며, 우리나라 쌀의 경우 그 원

¹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란 수출국들에게 수입국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에 한해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제도임.

칙에 따라 2010년(또는 2015년)까지의 국내보조 상한이 결정되고, 관세화되는 경우 관세 감축 폭과 TRQ 증량폭이 정해지게 된다.

- 양자협상 단계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하여 이해당사국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하는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 2003년 1월까지 세부원칙에 관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DDA 농업협상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2월에 1차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고 합의를 독려했으며, 3월 특별회의에서 2차 세부원칙 초안을 가지고 주요 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의견절충에 실패하여, 3월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한다는 당초의 협상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 2003년 3월에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은 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비해 보다 급진적인 관세감축 및 농업보조 감축안을 담고 있으나, 개도국 우대는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 관세감축은 관세구간별로 차등 감축률이 적용되어 선진국의 경우 향후 5년간에 평균 40~60%(최소 25~45%)를 줄이고(이는 UR에서의 평균 36%, 최소 15%보다 감축 폭이 커진 것임),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5~40%(최소 15~30%)를 줄이는 대신(UR에서의 평균 24%, 최소 10%보다 감축 폭이 커진 것임), UR에서는 없었던 개념인 국가별 특별품목²(SP: Special Products)에 대하여는 10년간 10%, 최소 5%만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1).

2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은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농촌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품목으로 개도국이 지정토록 되어 있음.

표 1. 관세감축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DDA 초안	90% 초과	60%	45%	5년	120% 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 이하	40%	25%		20~60%	30%	20%	
					20% 이하	25%	15%	
					특별품목(SP) []개	10%	5%	
UR 협정문		36%	15%	6년		24%	10%	10년

-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관세할당(TRQ) 증량은 1999~2001년 평균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5년간 10% 까지(UR에서의 6년간 5%까지 증량보다 확대), 개도국은 10년간 6.6% 까지(UR에서는 10년간 5%까지 증량보다 확대) 늘리는 대신,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증량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2).

표 2. 관세할당 증량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증량방법	이행기간	증량방법	이행기간
DDA 초안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 미만 품목은 10%까지 증량. 단 해당 품목의 1/4은 8%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1/4은 12%까지 증량	5년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 미만 품목은 6.6%까지 증량. 단 해당 품목의 1/4은 5%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1/4은 8%까지 증량 * SP품목은 증량 면제	10년
UR 협정문	1986~1988년 수입 실적이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인 품목은 그 물량 보장, 3% 미만인 품목은 이행개시연도 3%에서 이행최종연도 5%까지 증량	6년	선진국 증량방법과 동일	10년

- 국내보조(AMS) 감축은 총액 기준으로 선진국은 5년간 60%(UR에서는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40%(UR에서는 13.3%)를 줄이는, 즉 UR 보다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UR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품목별 보조금 상한이 설정되어 1999~2001년 평균 품목별 지급액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보조금 운용 면에서 융통성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표 3).
- 의장초안에 제시된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감축 원칙을 쌀에 적용하게 되면, 쌀의 관세는 2005년 396%³에서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2010년 218~386%로 낮아진다(표 4).
-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2004년 기준으로 20만 5천 톤에서 증량하지 않으나,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준 연도 국내 소비량의 8%인 36만 6천 톤까지 늘려야 한다.
- 국내보조의 경우 쌀 수매에 95% 이상이 소요되는 AMS는 2004년 1조 5천억원에서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2010년에 6천억~1조 2천억원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표 3. 국내보조감축에 대한 DDA 의장초안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DDA 초안	60%	5년	40%	10년
UR 협정문	20%	6년	13.3%	10년

³ UR 농업협정문의 기준 연도(1986~88년) 국제가격을 타이 A-1 Special으로 적용한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는 440%이며, UR 이행기간 중 이의 10%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DDA 이행개시년도의 TE는 396%가 됨.

표 4. 의장초안 적용시 쌀의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수준

		2005	2010	
			개도국	선진국
시장접근	관세(%)	396	386	218
	TRQ(천톤)	205	205	366
국내보조	AMS(원)	1조 4,900억	1조 1,920억	5,960억

3. DDA 농업협상 전망

- 현재 DDA 농업협상은 2003년 3월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수출입 국간의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말 시한내 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의 추진력(momentum)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3월말까지의 세부원칙 도출 실패는 지금까지의 농업협상의 흐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귀결로 판단된다.
 - 협상의 주요 당사국이라 할 미국과 EU간에 세부원칙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제시된 세부원칙 초안은 정치적 합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짧은 기간만의 기술적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자체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특히 EU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역내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위한 EU의 신축적 입장을 기대하기 곤란했으며, 미국도 이라크전쟁 등 현안에 DDA의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상태였다.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가 2004년 말까지 DDA 타결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캔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 회원국 간 집중적인 의견절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이전은 협상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되, 6월의 EU 정상회의 이후 9월까지의 캔쿤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의장과 주요국간에 세부원칙 도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6월중의 EU 정상회의에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인데, 얼마나 과감한 개혁안이 도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DDA 농업협상에 임하는 EU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9월 캔쿤 각료회의를 계기로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이 다시 한 번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만일 캔쿤 각료회의에서도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합의 도출되지 않는다면 기 제시된 협상 일정상 2004년말까지의 DDA 타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DDA 타결은 당초 제시한 협상일정인 2004년 말 보다 지연될 것이다.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따라 오는 2004년중에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당사국들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2004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 관세화유예를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기준 연도 관세상당치의 90%에서 관세를 낮추어 나가되 관세의 감축 폭 및 감축기간은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 이러한 쌀재협상은 DDA 농업협상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쌀의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 이해당사국들에게 제공해야 할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는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할당물량의 증량과 연관된다.
- 이해당사국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04년 말까지 협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 순연된다기보다는 이해당사국들과의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거나 관세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쌀재협상을 2004년 이후로 지연할 경우 쌀 시장개방은 물리적으로 동결될 수 있으나, 최종 합의에는 그 기간 만큼에 상응하는 추가적 시장개방 요구가 따르게 될 것이다.
- 한편 쌀재협상 초기에 이해당사국들은 협상전략상 무조건적으로 쌀의 관세화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DDA 농업협상의 지연은 쌀재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화유예 연장의 조건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상의 초기에 관세화유예 연장의 조건을 논의하기보다는 쌀의 관세화이행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쌀재협상이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합의되기 이전에 개시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관세화이행과 관세화유예간의 국내파급효과의 비교가 불확실해져 협상전략상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 쌀재협상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우리나라의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는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물량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04년 쌀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이해당사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접근물량 수준과 관세화로의 전환시 예상되는 쌀 수입량간의 비교는 협상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물량을 넘는 과도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요구시 관세화로의 전환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예상 시장접근물량의 수준은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물량의 증량 수준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유예의 경험을 기초로 삼아 볼 때 관세화유예 연장의 대가(premium)는 최소 국내 소비량의 3%로 추산된다.
 - UR 농업협상에서 일본은 쌀 관세화유예를 위하여 국내 소비량의 8%를 시장접근물량으로 설정한 바 있다. 선진국의 TRQ 증량 수준이 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쌀 관세화유예의 대가는 3%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대만도 WTO 가입시 쌀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국내 소비량의 8%를 시장접근물량으로 설정하였다.
-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의 TRQ 증량은 품목 간 융통성을 최대한 이용할 경우 기준 연도(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5~8%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유예연장의 대가인 3%를 더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예상 시장접근물량의 하한선은 8~11%(366~504천톤)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즉 2004년 쌀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이해당사국들이 요구할 시장접근물량 확대수준은 우리나라가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최소 8%,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11%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에 따라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0년의 수입량은 개도국지위 유지시 373천 톤, 선진국지위시 607천 톤으로 예측되어, 기준 연도 평균 국내 소비량의 각각 8.2%, 13.3%에 해당한다(표 5).
- 즉 쌀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이해당사국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시장접근물량 확대수준은 우리나라가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8.2%,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13.3%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큰 시장접근물량을 조건으로 관세화유예를 받는 것보다는 관세화가 예상 쌀 수입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2004년 쌀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이해당사국들이 요구할 시장접근물량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시 기준 연도 소비량의 8% 내외가 될 것이며, 선진국 지위시 11~13%가 될 것으로 보인다.
- DDA 농업협상이 지연될 경우, 쌀재협상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시장접근물량 확대수준이 맞물리는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쌀 관세화시 2010년 예상 수입량과 시장접근물량의 관계

관세화		관세화 유예	
조 건	2010년 수입량	최소 MMA 요구 (TRQ+유예의 대가)	MMA 수용 상한
개도국 조건 (특별품목화)	373천톤 (8.2%)	8% (5+3)	8.2%
선진국 조건 (SSG 적용)	607천톤 (13.3%)	11% (8+3)	13.3%

6. 협상대책

가.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양자 협상카드 준비

- 2004년 쌀재협상과 DDA 농업협상이 실질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는 다자간 협상에서 거론되기보다는 이해 당사국간의 양자협상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을 대비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양자협상 준비를 위해서 설득논리의 개발은 물론 적절한 협상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주요 이해당사국에게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 설득논리의 개발 이 밖에도 밀고 당기기과 주고받기라는 양자협상의 속성상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이해당사국별 적절한 협상카드가 준비되어야 한다.
 -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관심 사항과 관심품목을 사전에 확인하여 그들의 관심 사항과 우리의 관심 사항을 상호 연계,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삼아 우리의 협상전략을 수립
 - 주요 이해당사국별 예상 관심품목
 - 중국: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일부 과일류, 검역
 - 미국: 쌀, 쇠고기, 오렌지, 견과류 등
 - 타이: 쌀, 일부 축산물 및 열대 과일

- 호주, 뉴질랜드: 쌀, 일부 축산물 및 일부 사료곡물

나. 전체적인 시장개방의 폭을 낮추는데 중점

- 농업협상의 진전속도를 보아가며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되, 협상의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기 이전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에 안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개도국지위 유지가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임에는 틀림없으나, 현 단계 농업협상의 진척속도를 감안해 볼 때, 협상의 세부원칙이 도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개도국지위 유지보다는 전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9월 쉐안 각료회의에서도 합의·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장초안에 제시된 개방 폭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협상전략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 선진 수입국과의 연대 강화로 전체적인 시장개방의 폭을 낮추는 것이 만에 하나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될 위험을 줄이는 위험관리방안이며, 동시에 개도국 우대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 비농업 부문과의 Trade-off 검토

- DDA 타결이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결정됨에 따라 어느 한 분야도 타결되지 않으면 합의된 모든 분야의 협상도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DDA의 14개 협상그룹의 협상은 상호 연계성을 가진다.

- 그러나 협상그룹간의 이해 조정은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내 정치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상대국 내에서도 원만하게 이해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며, 결국 부문간, 특히 농업 내외 부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 농업보호를 위해 무역 상대국에게 가장 적절하게 양보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와 주요 민감 농산물의 시장개방 수준에 가장 크게 이의를 제기할 중국과 미국이 서비스협상 분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개방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우편·송달의 특급배달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 중국: 법률, 한방을 포함한 보건의료, 시청각, 교육 서비스 등

라. 쌀재협상에 대비한 별도의 협상카드 준비

- 2004년 쌀재협상은 이해 당사국과의 양자협상 위주로 전개될 것이고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쌀재협상에 대비한 별도의 신중한 협상카드가 준비되어야 한다.
- 관세화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이해 당사국의 쌀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구 수준이 매우 클 경우 우리는 쌀의 관세화로의 전환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쌀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물량 이내에서 관세화유예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수준이 거론될 경우 이해 당사국의 다른 관심품목과의 상호 연계도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동

식물 검역조건의 완화를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해 당사국별 양자협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사전에 예상하여 단계별 협상카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 협상전략상 쌀재협상 초기에 이해 당사국은 우선 쌀의 관세화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우리가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다.
- 특히 DDA가 지연될 경우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쌀협상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소득 전망⁴

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기반이 안정적인데 반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격 하락에 따라 벼농업소득이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거나, 2004년 쌀재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가 계속된다고 해도 쌀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1. 관세화되어 선진국 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 ☐ 선진국 조건으로 관세화하여 개방할 경우,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해도 2010년 농가판매가격은 11만 6천원/80kg으로 2001~02년 평균 15만 4천원에 비해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질가격으로는 44% 하락하는 것이다.
- ☐ 2010년 벼 재배면적은 2001~02년 평균 107만ha 대비 29% 감소한 76만ha, 쌀 생산량은 378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 2010년의 10a당 소득은 67만원으로 2001~02년 평균 76만 6천원에 비해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 2010년 쌀 총소득은 2001~02년 평균 7조 9,590억원 대비 36%, 연평균 5.4% 감소한 5조 9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논농업직불이 3,970억, 소득보전직불이 5,860억원).

⁴ 이 장에서의 전망은 KREI-ASMO 2002 모형에 의한 결과임. 여기서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중립중 쌀 국제가격을 \$300/톤, 환율을 1,200원/\$로 가정한 것이고, 또한 의장초안도 바뀔 것이므로, 수치 자체보다는 증감 폭의 정도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임.

2.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고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개방 폭을 최소화한다면 2010년 농가판매가격은 14만 4천원/80kg으로 2001~02년 평균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실질가격으로는 25% 하락한 것이다.
- 2010년 벼 재배면적은 2001~02년 대비 23% 감소한 82만ha, 쌀 생산량은 407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의 10a당 소득은 76만 5천원으로 2001~02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총소득은 2001~02년 대비 22%, 연평균 3.0% 감소한 6조 2,46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논농업직불이 3,970억, 소득보전직불이 770억 원).

표 6. DDA 시나리오별 쌀 소득, 생산, 가격 전망

		총소득 ¹⁾ (명목)	10a당소득 ¹⁾ (명목)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명목)
		(10억원)	(천원)	(천ha)	(천톤)	(천원/80kg)
2001-02 평균		7,959	766	1,068	5,221	154
2005		7,636	801	983	4,896	147
2010	추가개방 없음	6,359	777	819	4,081	146
	개도국	6,246	765	818	4,074	144
	선진국 ²⁾	5,097	670	759	3,776	116

주: 1) 논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을 포함. 2) 쌀에 SSG를 적용한 경우임.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이후의 시장개방 폭과 쌀 가격은 유예연장의 대가로 양허한 시장접근물량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접근물량은 개도국 지위시 기준 연도 소비량의 8% 내외가 될 것이며, 선진국 지위시 11~13%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화유예시의 2010년 국내 쌀 가격과 소득수준은 이 장의 1, 2절에서 본 관세화시의 선진국, 개도국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 2004년 시장개방 수준이 그대로 지속되어 향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에도, 쌀 수요 감소에 따라 2010년 농가판매가격이 14만 6천원/80kg으로 하락하고, 쌀 총소득은 6조 3,590억원으로 2001~02년 보다 21%, 연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도국지위 유지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림 1. DDA 시나리오별 쌀 총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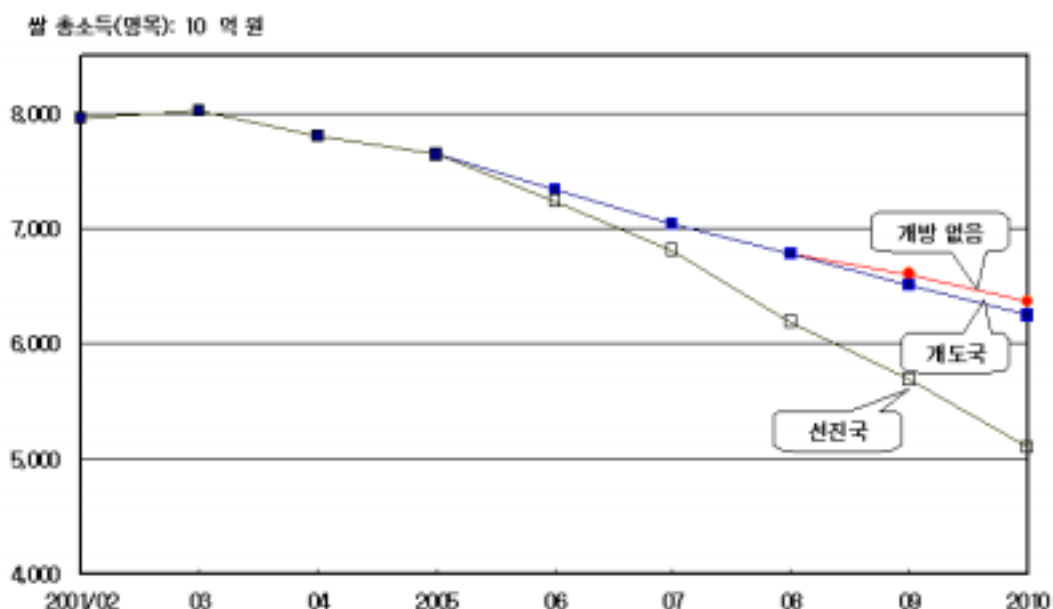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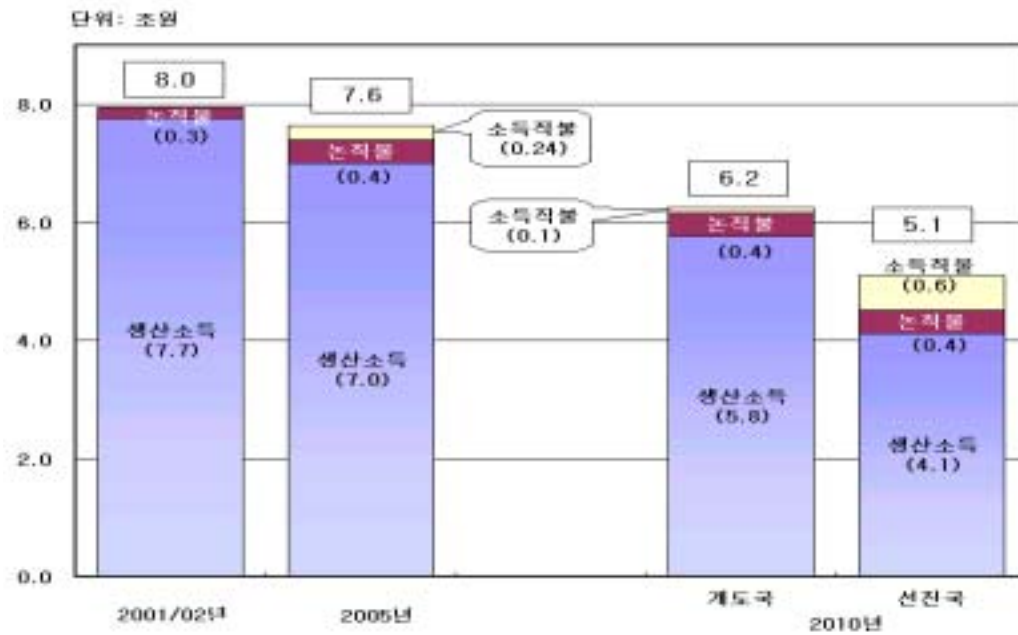


그림 2. DDA 시나리오별 쌀 총소득 구성 전망



- 2010년 벼 재배면적은 개도국 지위 유지시와 같은 수준인 82만ha, 생산량도 409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향후 쌀 문제는 쌀 시장개방 확대에 관계없이 나타날 쌀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수매제도와 소득정책 방향이 검토해야 한다.

IV. 정책제안 1: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약정수매제가 대부분의 AMS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지지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수매제도에 의하여 쌀 농업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 감축대상정책인 약정수매제를 허용대상정책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AMS를 소득지지효과가 큰 직접지불제로 이용한다.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 정부수매의 직접소득효과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따라 결정되고, 수매량은 수매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직접소득효과는 수매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 \text{직접소득효과} = (\text{수매가격} - \text{시장가격}) \times \text{수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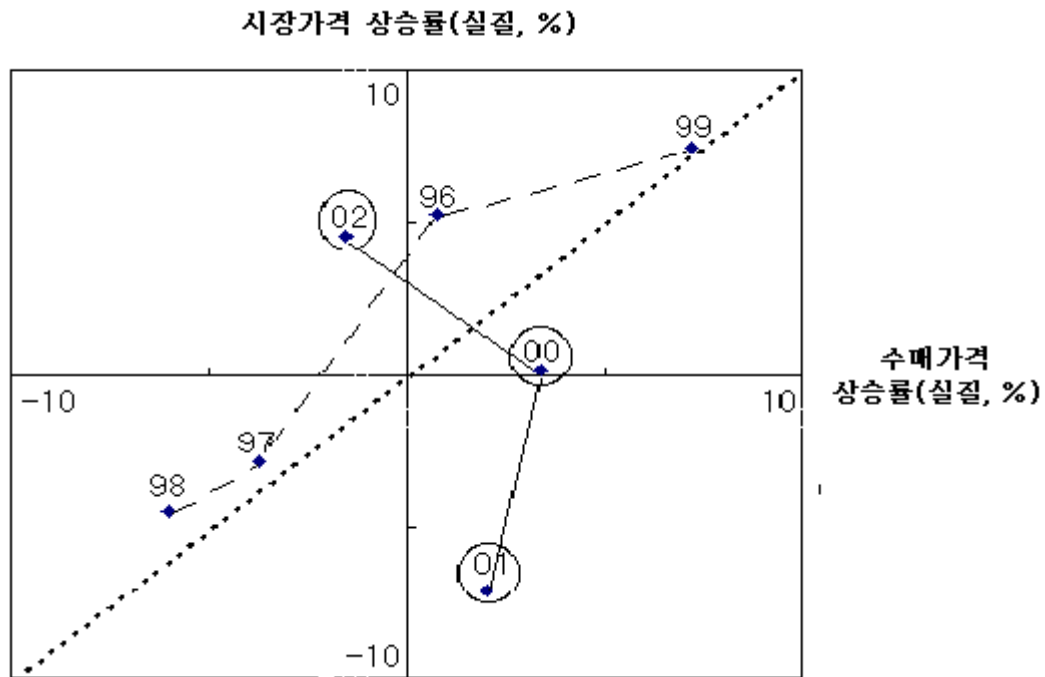
$$* \text{수매량} = \text{AMS} / (\text{수매가격} - \text{기준가격})$$

- 정부수매의 간접소득효과는 수매가 수확기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 \text{간접소득효과} = \text{수매에 따른 산지가격 등락} \times \text{수확기 출하량}$$

- 공급 부족이었던 1996년 이후 1999년까지는 정부수매가격이 산지거래의 지표가격으로 작용하여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만큼 간접소득효과가 있었다(그림 3).
- 그러나 과잉 기조로 전환된 2000년 이후에는 수매가격의 인상/인하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수매량이 증감하므로 정부수매가격의 지표가격 기능이 소멸되었고, 도리어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

그림 3. 수매가격 인상률과 수확기시장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 DDA 협상에서 쌀 수매에 사용할 수 있는 AMS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매 가능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매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감소속도도 빨라진다.
- 향후 수매가격을 동결할 경우 수매 가능물량은 2002년 550만석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시 2010년에 385만석으로 감소하고, 선진국지위 시에는 2007년에 151만석까지 감소한 후 2008년 이후에는 수매가 불가능해진다 (표 7).
- 향후 수매가격을 연간 3% 인상할 경우에는, 개도국지위 유지시 2010년

표 7. DDA 시나리오별 수매 가능물량

단위: 만석

연도	수매가격 동결		수매가격 매년 3% 인상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1995	955			
2002	550			
2003	453		438	
2004	437		410	
2005	432		392	
2006	432	302	380	266
2007	434	151	370	129
2008	430	0	355	0
2009	420	0	336	0
2010	385	0	298	0

주: AMS에서 소득보전직불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의 95%를 쌀 수매에 사용 가정

에 298만석으로 감소하고, 개도국지위 유지에 실패하면 2007년에 129만석으로 감소하여 2008년부터 수매가 불가능해진다.

- 수매 가능물량이 250~300만석 이하로 감소하면 식량안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양곡확보조차 어렵게 된다.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 약정수매제도는 우리나라에게 허용된 감축대상 국내보조(AMS)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매우 적어 대단히 비효율적인 농가소득지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2001~02년에 AMS의 92%인 1조 5,472억원을 쌀 수매에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한 직접소득효과는 1,841억원(AMS 사용액의 12%)에 불과하다.

-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AMS를 보다 소득지지효율이 높은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
- 쌀 생산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하여 향후 수매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벼농업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도국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향후 수매가격을 동결하면 직접소득효과가 2002년 1,441억원에서 2010년 1,652억원으로 211억원 증가하는 데 그

표 8. DDA 시나리오별 수매의 직접소득효과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수매가격 동결		수매가격 매년 3% 인상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1995	2,613			
2002				
	1,441			
2003	1,479		1,829	
2004	1,519		2,177	
2005	1,617		2,565	
2006	1,675	1,464	2,912	2,293
2007	1,708	940	3,232	1,419
2008	1,708	0	3,487	0
2009	1,682	0	3,673	0
2010	1,652	0	3,675	0

표 9. 수매가격 시나리오별 시장가격과의 격차 전망

	수매가격(원/80kg)		시장가격 (원/80kg)	
	동결	3% 인상	개도국	선진국
2001/02년 평균	167,720	167,720	154,500 (1.1)	
2005	167,720	183,270	146,900 (1.2)	
2010	167,720	212,460	145,800 (1.5)	116,000 (1.8)

주: () 안은 수매가격 3% 인상과의 가격비임.

치고, 매년 3% 인상하더라도 2010년에 2,234억원 증가하는 데 머물러 벼농업 소득 감소액 1조 7,130억원의 13%를 보완하는데 머물게 된다.

- 개도국지위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매 가능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매제도가 쌀 농업소득 감소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이다.
- 수매가격을 매년 3% 인상하면 2010년 산지시장가격은 14만 6천원/80kg 인(개도국지위 유지시) 반면 수매가격은 21만 3천원/kg이 되어 가격격차가 6만 7천원/80kg(46%)으로 커져 수확기 산지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 약정수매제는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AMS 제약으로 2008년부터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지지효율도 매우 낮으므로, 허용보조인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약정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게 되면 약정수매에 묶여 있던 AMS를 농가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양곡연도말 비축물량은 소비량의 11~13% 수준(2년 연속 흉작에 대비)으로 하며, 수확기에 비축 기준물량의 1/2을 매입하고 매입물량 만큼 단경기에 방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입 및 방출량은 풍흉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비축제가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재고누증 등 물량조절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풍흉에 따른 물량조절의 신축적 범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 매입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구매를 하거

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매입이 보장되도록 하며, 방출방식은 현재의 조곡공매와 소비자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매입하는 벼의 품종을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 조곡공매는 시기와 물량을 예시하여 유통업체로 하여금 원료곡 매입, 공매참여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V. 정책제안 2: 소득지지직불 강화

정부는 소득지지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농가가 자구노력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기준 연도 10a당 소득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 2ha 이상의 중대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경지면적 비중은 1990년 17%에서 2000년에는 35% 이상으로 증가하여 쌀 농업이 대규모 계층으로 빠르게 집중하고 있다.
 - 5ha 이상 농가의 비율은 1.3%이지만 면적비중은 10%를 넘어 농가의 44%를 차지하는 0.5ha 이하 계층의 생산규모에 필적할 만큼 벼농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이 같은 움직임은 고령농가의 농지공급과 전업농의 농지 수요에 의한 농지임대차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 영농규모화사업의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60세 이상 고령계층의 호수비중은 52%이고, 경지면적 비중은 42.5%에 달해 앞으로 농지임대차시장을 통한 대농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작지에서 자가노동 중심으로 생산하는 영세농의 경영비는 31,000원/80kg에 불과하므로 쌀 가격 하락 시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영세농의 수효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세소농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벼농업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0.5ha 이하 계층의 호수비중은 44%이지만 경지면적 비중은 14%에 지나지 않아 전체 쌀 농업의 생산성이나 규모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규모화는 농지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수에게 집중하는 정책지원은 농지가격 상승 등 시장을 왜곡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의 방향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인 ①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나 전직 등의 기회비용이 적은데 대한 직접소득보상, ② 농지유동을 촉진할 수 있는 농지은행제도 도입, ③ 규모 확대나 가격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에 대한 포괄적 사회복지지원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 미국과 EU 방식과 같이 향후 10a당 쌀소득 또는 조수입이 기준 연도(예 2001~02년 평균)의 소득 또는 조수입보다 감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그보다 하회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목표소득지지제(가칭)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의 논리는 DDA 농업협상과 쌀재협상 이후 현행의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로는 향후 10a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장개방 확대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후생경제적 보상(compensation)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10a당 명목소득은 정부가 보장하고,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따라잡기 위한 경영규모화는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한다는 역할 분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개도국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a당 소득이 76만 5천원으로 추정되지만, 개도국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67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10a당 9만 6천원의 추가직불을 지원하여 10a당 소득이 기준 연도(2001~02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그림 5).
- Amber Box(감축대상보조) 형태의 현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Blue Box(감축유예보조) 형태의 “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변경한다.
- Green Box(허용보조) 형태의 현행 “논농업직접지불제”를 Green Box 형태의 “고정직접지불제”로 변경한다.
- 소요되는 직접지불은 먼저 AMS와 허용보조인 “고정직접지불”을 활용하되, 그 부족분은 Blue Box 형태의 “소득보전직접지불”로 지원한다.

그림 4. 10a당 쌀 소득목표 설정



VI. 요약

-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쌀 시장 관세화 개방 여부는 2004년 쌀협상에서 결정되지만, 2005년 이후의 쌀 시장 개방 폭과 보조금 감축에 관한 일반 원칙은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르게 된다.
- 우리나라가 당면한 쌀산업의 근본문제는 쌀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벼농업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거나,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가 계속된다고 해도 쌀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데 있다.
- 대부분의 AMS가 약정수매제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수매량이 감소하고 소득지지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수매제도에 의하여 쌀 농업소득의 감소를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의 감축보조정책인 약정수매제는 허용보조정책인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약정수매에 묶여 있던 AMS를 보다 효율적인 농가소득지지에 사용하도록 한다.
- 단위면적당 명목소득은 정부가 보장하고,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따라잡기 위한 경영규모화는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한다는 역할 분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준 연도의 10a당 소득 또는 조수입을 정부가 보장하는 목표소득지지제(가칭)를 도입하되, 현행 감축보조 형태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감축유예보조 형태의 “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허용보조 형태의 현행 “논농업직접지불제”를 “고정직접지불제”로 조정하여 운용한다. 소요되는 직접지불은 먼저 AMS와 “고정직접지불”을 활용하고, 그 부족분은 “소득보전직접지불”로 지원한다.

참 고 문 헌

- 박동규 등. 2002. 『2002년 수확기 쌀 시장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등. 2003. 『산지 쌀 가격 조사체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등. 1999. “한국쌀 농업의 선택: 관세화인가, MMA인가?”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정환 등. 2002.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옥, 서진교, 이병훈. 2002.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석원. 1998. “양곡(쌀) 유통 실태 및 구조 개혁 방향.” 한국유통학회.
- 윤석원, 이대훈. 1999. “수확 후 산지 쌀 관리 및 유통구조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 윤석원, 김근영. 2002. “쌀 유통 실태 및 개선 방향.” 총서 13. 한국쌀연구회.
- 정태호. 1997. “산지 미곡유통의 변화와 미곡종합처리장.”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1998. “미국주산지 쌀 생산 및 판매실태.”
- 농협중앙회. 2001. “수확기 쌀 유통여건 전망과 대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토의용 논문 W21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 7.

발 행 2003. 7.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